



대구대학교 ·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 협약서



대구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는 협동대학으로서 학점인정 및 교류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상호발전을 도모하며,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하고 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 간 학점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점교류의 범위)

학점인정을 위한 교류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정규학기 중 일부 특정과목의 수강 및 학점교류
2. 방학 중 개설한 계절수업 강좌의 수강 및 학점교류

제3조(개설과목의 결정)

매학기 개설과목은 양 대학간 협의하에 결정하기로 한다.

제4조(수강신청 및 수강승인)

1. 매학기 지정된 교류대학 학점인정 과목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하다.
2. 학기당 수강신청은 학점교류 범위내에서 각각 2과목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하여 과목수를 조정 할 수 있다.
3. 본 협약에 의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양식에 작성하여 소속대학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4. 수강승인된 과목은 취소, 변경 할 수 없다.
5. 수강승인은 강의개설 2주 전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6. 개설 과목당 수강인원은 양 대학간 협의하에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(수업료)

1. 교류대학의 수업료 책정, 지불방법 및 시기 등은 양대학간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한다.
2. 학점취득에 필요한 실험실습 등에 따르는 비용은 대학간 상호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.

제6조(학점인정)

학생이 교류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대학의 학칙 및 인정절차를 거쳐 총장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한다.

제7조(교류학생의 자격과 의무)

1. 양대학교간 학점인정을 위한 학생의 신청자격은 소속대학에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한다.
2. 학점교류 신청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학생지도 및 관리)

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한다.

제9조(기타)

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협약대학 간의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하며, 상세한 내용은 협의에 의한다.

제10조(시행일)

이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되며 합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이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 대학별로 1부씩 보관한다.

2005년 10월 6일

박 용

대 구 대 학 교
총장직무대행 박 용

이 영 세

대 구 사 이 버 대 학 교
총 장 이 영 세